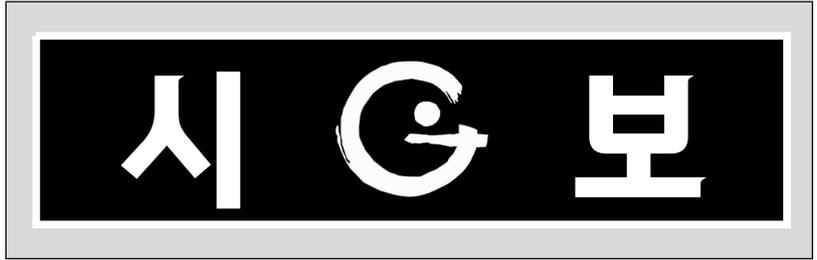


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9호 2024. 2. 28.(수)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4-55호	광양시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
광양시 고시 제2024-60호	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4
광양시 고시 제2024-62호	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6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4-486호	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·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8
광양시 공고 제2024-497호	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 11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발행 : 광양시 ▶편집 : 홍보소통실 (☎797-2713, 행정2713)

광양시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경미한 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29일

광 양 시 장

가. 유원지의 위치: 광양시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

나. 유원지의 규모: 1,129,990㎡

다. 유원지 결정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3	백운 유원지	유원지	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	1,129,990	-	1,129,990	2009. 7. 13.	



라. 유원지 조성계획(유원지 제3호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부지면적 (㎡)			시설면적 (㎡)				비고
				건축면적		연면적		
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총계	1,129,990	-	1,129,990	12,684	15,088	38,424	43,186	시설율 19.6%
시설소계	223,727.2	감)2,814	220,913.2	12,684	15,088	38,424	43,186	
운동시설	21,379	-	21,379	152	152	152	152	
휴양시설	125,709.2	감)2,814	122,895.2	12,496	14,900	38,236	42,998	
특수시설	24,459	-	24,459	36	36	36	36	
관리시설	52,180	-	52,180	-	-	-	-	
녹지	906,262.8	증)2,814	909,076.8	-	-	-	-	녹지율 80.4%

마.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3	백운 유원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면적 변경 : 감) 2,814 ㎡ - 휴양시설면적 : 감) 2,814㎡ 녹지면적 변경 : 증)2,814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옹벽공사에 따른 면적 변경(2,814㎡)



바. 세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	시설명	부지면적 (㎡)			시설면적(㎡)				비고
						건축면적		연면적		
	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총계			1,129,990	-	1,129,990	12,684	15,088	38,424	43,186	시설율 19.6%
시설소계			223,727.2	감2,814	220,913.2	12,684	15,088	38,424	43,186	
운동 시설	소계		21,379	-	21,379	152	152	152	152	
	1-1	물놀이장	18,798	-	18,798	152	152	152	152	
	1-2	수상레포츠	2,581	-	2,581	-	-	-	-	
휴양 시설	소계		125,709.2	감2,814	122,895.2	12,496	14,900	38,236	42,998	
	2-1-1	숙박시설	15,833	-	15,833	2,801	2,801	6,394	6,394	
	2-1-2	숙박시설	15,750.2	-	15,750.2	1,326	1,326	1,461	1,461	
	2-2-1	복합휴양시설	30,370	감2,814	27,556	3,455	5,859	6,288	11,050	
	2-2-2	복합휴양시설	29,533	-	29,533	4,826	4,826	23,978	23,978	
	2-3	오토캠핑장	34,223	-	34,223	88	88	115	115	
특수 시설	소계		24,459	-	24,459	36	36	36	36	
	3-1	초화원	24,459	-	24,459	36	36	36	36	
관리 시설	소계		52,180	-	52,180	-	-	-	-	
	4-1	도로	32,997	-	32,997	-	-	-	-	
	4-2	산책로	19,183	-	19,183	-	-	-	-	
녹지			906,262.8	증2,814	909,076.8	-	-	-	-	녹지율 80.4%

바. 유원지 조성계획 세부시설 관계 조서 및 도면: 게재 생략(광양시청 공원과 비치)
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(☎061-797-29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. 2. 28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104-3 외 4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27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4. 2. 28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물번호 부여 5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312-2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104-3	20240228	20081001	옛 읍성 터에서 인용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67-1, 467-2, 467-3, 467-12	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1길 30	20240228	20081001	행정리명에서 인용, 일련번호식 부여
3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죽천리 산54	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항월길 36-11	20240228	20081001	행정리명에서 인용
4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태인동 1776, 1777	전라남도 광양시 명당3길 41 (태인동)	20240228	20191113	마을지명에서 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
5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667-11	전라남도 광양시 하포길 130-14 (황길동)	20240228	20081001	마을지명에서 인용



광양시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호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(공원 제1호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의2,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및 제32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4. 2. 29.

광 양 시 장

가. 공원의 위치 :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

나. 공원의 규모 : 355,562㎡

다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 조서(변경 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시설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서산공원	근린공원	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	355,562	-	355,562	1986.07.07. (2020. 07. 01) 광양시 242호	미집행 구간 실효



라. 공원조성계획(공원 제21호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면적(㎡)							비고
	부지면적			건축면적				
	기정	변경	변경후	바닥면적		연면적		
		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총계	355,562	-	355,562	1,245	629	1,245	629	
시설소계	81,384	감)18,859	62,525	1,245	629	1,245	629	시설률17.6%
도로 및 광장	7,061	감)4,610	2,451	-	-	-	-	
조경시설	6,725	감)1,254	5,471	-	-	-	-	
휴양시설	47,276	감)9,099	38,177	-	-	-	-	
유희시설	390	감)390	0	-	-	-	-	
운동시설	488	감)488	0	-	-	-	-	
교양시설	6,459	감)2,656	3,803	1,200	629	1,200	629	
편익시설	12,985	감)362	12,623	45	-	45	-	
녹지	274,178	증)18,859	293,037	-	-	-	-	

마.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서산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면적 변경: 감)18,859 ㎡ - 도로 및 광장 감) 4,610 - 조경시설 감) 1,254 - 휴양시설 감) 9,099 - 유희시설 감) 390 - 운동시설 감) 488 - 교양시설 감) 2,656 - 편익시설 감) 362 ▪ 녹지면적 변경: 증)18,859 ㎡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020.7.1.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사유지 면적의 공원구역 실효됨에 따라 현재 여건 반영 ▪ 편익시설(주차장 등), 휴양시설, 교양시설 등 추가로 근린공원 기능 향상을 도모

바. 공원조성계획 세부시설 관계 조서 및 도면: 게재 생략(광양시청 공원과 비치)

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(☎061-797-295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
광양시 공고 제2024-486호

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·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1일

광 양 시 장

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·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1. 폐지취지: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존속기한 만료로 조례의 실효성 상실
2. 주요내용: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·운영 조례 폐지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산단택지과장, 전화: 061-797-3118, FAX: 061-797-2597, kjg0603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 및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.
2. 폐지조례안 1부. 끝.

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·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

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
설치·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 회계 설치·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광 양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,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장애인교통비 지급액 월 20,000원으로 지원 확대(안 제19조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2조제2항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2. 22. ~ 2024. 3. 13.(20일간)

4. 의견 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 : 노인 장애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연락처

다. 의견 제출 방법: 직접방문(서면), 팩스, 전자우편

라. 의견 제출할 곳

- 주 소: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(중동), 노인장애인과(우편번호 57785)

- 전 화: 061-797-2343

- 팩 스: 061-797-2582(팩스 송부 후 전화 요망)

- 전자우편: skandkal@korea.kr

※ 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

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

조례 일부 개정안

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15,000원”을 “2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위탁”을 “지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9조(지급액) 장애인교통비 지급액은 월 <u>15,000원</u> 이내로 한다</p>	<p>제19조(지급액) ----- ----- <u>20,000원</u> -----.</p>
<p>제35조(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등에 공개경쟁을 통해 <u>위탁</u> 운영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35조(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정</u> ----- -----.</p>

